[별지 제17호 서식]

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신청서				처리기간 20일
신청인	①상 호		②사업자등록번호	
	③소 재 지	(전화 :)		
	④대 표 자		⑤주민등록번호	
	⑥본 적			
	⑦호 주 명			
	⑧사업소명			
	⑨사업장소	(전화 :)		
	⑩담당부서		⑪담 당 자	

원자력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부장관 귀하

수 수 료
원자력법시행규칙 별표 8의 수수료표에 의함

※ 구비서류

1. 방사선안전보고서 1부
2. 방사선발생장치를 비파괴검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자력법시행령 제1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
3.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
4.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

16162-00511민 210㎜×297㎜

1997. 7.15.승인 일반용지 60g / ㎡(재활용품)